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4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서왕진·정춘생·박은정

김선민 · 김재원 · 황운하

허성무 · 김준형 · 강경숙

차규근 • 이해민 • 신장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6(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운영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이 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심야동물병원을 관리하는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 3.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 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동물병원에 지급한 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u>신 설></u>	제17조의6(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운영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 원(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이 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동물병원을 관리하 는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 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

-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동물병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 용한 경우
- 3.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
- 4.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 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동물병 원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동물 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동물 병원 지정의 기준 · 방법 및 절 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 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